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8748      |
| 의 퇴 인  | 구자근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7. 15. |
| 추 계 번호 | 26B2470      |

#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‘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’을 마련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도로안전시설<br>설치·관리 대상<br>시설의 서비스 품질<br>및 위생 관리 기준<br>(안 제47조의2제2항) | 40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40  | 8   |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7조의2(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) |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기준,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,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(제2항)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7조의2(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) | ○        | •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‘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’을 마련할 경우, 해당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해당 기준에서 규정할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의 내용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<sup>1)</sup>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마련  
(안 제47조의2제2항)
  - 현행법령<sup>2)</sup>은 ‘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, 주차장, 화물자동차 휴게소, 졸

1) 참고로, 국토교통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 중 졸음쉼터의 경우 총 91개소가 부지 협소 및 화장실 내부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

2) 법 제47조의2(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,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음습터, 버스정류시설’에 대하여는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

- 이에 따라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,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예규)에서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해당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‘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’ 수립 비용은 시설 품질 및 위생 관련 기준·지침 수립 연구용역 등 유사사례의 평균 비용을 참조하여 추계함
  -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유사사례의 내용

(단위: 백만원)

| 실시 기관  | 연구용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실시년도 | 예산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보건복지부  | 안전한 문신 기술을 위한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방안 마련 | 2024 | 50 |
| 한국철강협회 | 하강레저시설 품질관리 지침서 개발 연구             | 2022 | 30 |
| 평 균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40 |

자료: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내용 참조

- (추계 결과)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‘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’을 마련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으로 추계됨

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 
시행령 제45조의2(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)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“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,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휴게시설
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
3. 주차장
4. 졸음쉼터
5. 버스정류시설

[표 3] ‘도로안전시설 설치·관리 대상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’ 수립에 따른  
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도로안전시설<br>설치·관리 대상<br>시설의 서비스 품질<br>및 위생 관리 기준 | 40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40 | 8   |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최동완 | 예승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최동완 | 02-6788-3746 | dongwaniii@nabo.go.kr |